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79

발의연월일: 2021. 6. 14.

발 의 자:서영교·김민철·김영호

민병덕 · 서삼석 · 오영환

이용우 · 이해식 · 임호선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 5 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일 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면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당은 너무 작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근거의 변경없이 선거사무관계 자의 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다른 비용 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방법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에 2만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운동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 21조제2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 기타"를 "결정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의 인상액 반영 그 밖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1.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에 따른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제한액산 정비율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 2. 제135조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인상되어 그 인상액을 반영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 관한 특례)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제135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에 2만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 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 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 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 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 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 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 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③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 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1.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 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 에 따른 공고일이 속하는 달 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 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제 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 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 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 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 우.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 율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 2. 제135조에 따라 선거사무관 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 당의 금액이 인상되어 그 인 상액을 반영하는 경우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	
율의 <u>결정 기타</u> 필요한 사항은	결정 및 선거사무관계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수당의 인상액 반영 그 밖에
정한다.	